

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

[시행 2026.01.01]
(일부개정) 2025.09.24 조례 제1562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일자리경제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709-4395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이 조례에서 "청년"의 범위는 19세 이상 4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 <개정 2023. 11. 22., 2025. 9. 24.>
2. "청년정책"이란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,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.
3. "청년단체"란 청년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, 권익 증진,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4. "청년활동"이란 청년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, 권익 증진,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.
5. "청년시설"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.

제17조(청년정책 사업 등)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1. 22.>

1. 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
2.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
3. 고용확대 및 일자리·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
4.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
5. 문화·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
6. 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업
7.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군수는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학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,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료를 매년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11. 22.>

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활동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, 캠페인,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,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대상, 선정기준, 방법,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[제2항에서 이동 <2023. 11. 22.>]